

부속서 2-가

관세인하 또는 철폐

1. 이 부속서의 당사국 양허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단계별 양허유형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각 당사국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에 적용된다.

가.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E-0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완전히 철폐되며, 이 협정 발효일에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나.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E-5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4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다.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E-8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7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라.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RED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기준세율로부터 1퍼센트부터 5퍼센트 범위 내로 인하되어, 이행 7년차 1월 1일에는 그 상품에 대하여 1퍼센트부터 5퍼센트 범위 내의 관세가 적용된다.

마.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SEN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다음과 같이 인하된다.

1)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기준세율의 50퍼센트까지 인하되어, 이행 7년차 1월 1일에는 그 상품에 대하여 기준세율의 50퍼센트의 관세가 적용된다.

2) 인도에 대해서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기준세율의 50퍼센트까지 인하되어, 이행 9년차 1월 1일에는 그 상품에 대하여 기준세율의 50퍼센트의 관세가 적용된다. 그리고

바.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EXC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2. 제1항에 따른 관세 인하 또는 철폐는 다음의 시간표에 따라 이행된다.

대한민국의 연도별 관세 인하율

양허 유형	발효일	이행1년 1월1일	이행2년 1월1일	이행3년 1월1일	이행4년 1월1일	이행5년 1월1일	이행6년 1월1일	이행7년 1월1일
E-0	100%							
E-5	20%	40%	60%	80%	100%			
E-8	12.5%	25%	37.5%	50%	62.5%	75%	87.5%	100%
RED ⁵⁾	(기준세율-1~5%)× 12.5%	(기준세율-1~5%)× 25%	(기준세율-1~5%)× 37.5%	(기준세율-1~5%)× 50%	(기준세율-1~5%)× 62.5%	(기준세율-1~5%)× 75%	(기준세율-1~5%)× 87.5%	(기준세율-1~5%)× 100%
SEN	6.3%	12.5%	18.8%	25%	31.3%	37.5%	43.8%	50%

인도의 연도별 관세 인하율

양허 유형	발효일	이행1년 1월1일	이행2년 1월1일	이행3년 1월1일	이행4년 1월1일	이행5년 1월1일	이행6년 1월1일	이행7년 1월1일	이행8년 1월1일	이행9년 1월1일
E-0	100%									
E-5	20%	40%	60%	80%	100%					
E-8	12.5%	25%	37.5%	50%	62.5%	75%	87.5%	100%		
RED ⁵⁾	(기준세율-1~5%)× 12.5%	(기준세율-1~5%)× 25%	(기준세율-1~5%)× 37.5%	(기준세율-1~5%)× 50%	(기준세율-1~5%)× 62.5%	(기준세율-1~5%)× 75%	(기준세율-1~5%)× 87.5%	(기준세율-1~5%)× 100%		
SEN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3. 각 상품의 관세 철폐 기간 중의 세율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세율은 2006년 4월 1일에 적용되는 최혜국 대우 관세율이 된다.

4. 이 부속서 및 당사국 양허표의 목적상, **이행 1년차**란 제15.7조(발효)에 규정된 대로 이 협정이 발효한 이후 다음 연도를 말한다.

5. 이 부속서 및 당사국 양허표의 목적상, **이행 1년차**를 시작으로 매년 단계별 관세 인하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5)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양허유형 RED에 언급된 1퍼센트부터 5퍼센트의 범위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날까지 각 당사국 재량에 의하여 결정된다.